|  |  |  |
| --- | --- | --- |
|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출입국 관리조례**  **국무원 령 제637호**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출입국 관리조례>가 2013년 7월 3일의 국무원 제15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어 이에 공포하며,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리커챵  2013년 7월 12일  **제1장 총 칙**  **제1조** 비자의 발급관리와 외국인의 재중국 경내 체류 및 거류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이하 출입국관리법이라 함)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국가는 외국인 출입국서비스 및 관리 업무조율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외국인 출입국서비스 및 관리업무의 종합처리, 조율 및 공동협력을 강화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외국인 출입국서비스 및 관리업무 조율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정보교류 및 공동 협력을 강화하고 본 행정구역 내 외국인 출입국서비스 및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3조** 공안부는 국무원 유관부서와 함께 외국인 출입국서비스 및 관리 정보플랫폼을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제4조** 비자 발급관리와 외국인의 중국 경내 체류 및 거류 관리업무 중에서 외교부, 공안부 등 국무원 부서는 그 포털사이트, 출입국 비자신청을 수리하는 장소 등에서 외국인 출입국관리 법률, 법규와 기타 외국인에게 주지시킬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제2장 비자 종류와 발급**  **제5조** 외교비자, 예우비자, 공무비자의 발급 범위와 방법은 외교부에서 규정한다.  **제6조** 일반비자는 아래와 같이 비자종류를 구분하고 상응하는 중국어 병음 문자를 표시한다.  (1) C비자. 승무, 항공, 해상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국제열차 승무원, 국제항공기 탑승인원, 국제항행선박 선원 및 선원의 동반가족과 국제도로운송에 종사하는 자동차 기사에게 발급한다.  (2) D비자. 중국에서 영구 거류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3) F비자. 입국하여 교류, 방문, 시찰활동에 종사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4) G비자. 중국을 경유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5) J1비자. 중국 신문기구에 상주하는 외국 상주기자에게 발급한다. J2비자. 입국하여 단기 취재보도를 진행하는 외국기자에게 발급한다.  (6) L비자. 입국 관광을 하는 자에게 발급하며, 단체형식으로 입국하는 여행객의 경우에는 단체 L비자를 발급할 수 있다.  (7) M비자. 입국하여 상업 무역활동에 종사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8) Q1비자. 가족이 모이기 위해 입국 거류를 신청하는, 중국공민의 가족 구성원과 중국 영구 거류자격을 구비한 외국인의 가족 구성원, 그리고 입양 등으로 인해 입국 거류를 신청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Q2비자. 단기간 입국 친족방문을 신청하는, 중국 경내 중국공민의 친족과 중국 영구 거류자격을 구비한 외국인에게 발급한다.  (9) R비자. 중국이 필요로 하는 외국 고급인재와 시급히 수요되는 전문 인재에게 발급한다.  (10) S1비자. 장기간 입국 친족방문을 신청하는, 취업 또는 학습 등의 사유로 중국 경내에 거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배우자, 부모, 만 18세 미만의 자녀, 배우자의 부모, 그리고 기타 사적인 용무로 중국 경내에서 거류해야 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S2비자. 단기간 입국 친족방문을 신청하는, 취업 또는 학습 등의 사유로 중국 경내에 거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가족 구성원, 그리고 기타 사적인 용무로 중국 경내에서 체류해야 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11) X1비자. 중국 경내에서 장기간 학습을 신청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X2비자. 중국 경내에서 단기간 학습을 신청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12) Z비자. 중국 경내에서 취업을 신청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제7조** 외국인이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표를 작성하고 본인의 여권 또는 기타 국제여행증서, 그리고 규정에 부합되는 사진과 신청사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C비자 신청시에는 외국운수회사에서 제공한 담보문건 또는 중국 경내의 유관단위에서 발급한 초청장을 제출해야 한다.  (2) D비자 신청시에는 공안부에서 발급한 외국인 영구거류 신분확인표를 제출해야 한다.  (3) F비자 신청시에는 중국 경내 초청자가 발급한 초청장을 제출해야 한다.  (4) G비자 신청시에는 이전 국가(지구)에서의 일자, 좌석이 확정된 연결편 항공기(차량, 선박) 티겟을 제출해야 한다.  (5) J1 및 J2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국의 외국 상주 신문기구 및 외국기자 취재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 수속을 이행하고 상응하는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6) L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요구에 따라 여행계획 일정표를 제출해야 하며, 단체로 입국하는 여행객의 경우는 여행사의 초청장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7) M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국 경내의 상업 무역 합작측이 발급한 초청장을 제출해야 한다.  (8) Q1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가족이 모이기 위해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는 중국 경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중국공민, 영구 거류자격을 구비한 외국인의 초청장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양 등의 사유로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탁서 등의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Q2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국 경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공민, 영구 거류자격을 구비한 외국인의 초청장을 제공해야 한다.  (9) R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국정부 유관 주관부서에서 확정한 고급인재 및 시급히 필요한 전문인재 유치요건과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동시에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0) S1 및 S2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요구에 따라 취업, 학습 등의 사유로 인해 중국 경내에서 체류, 거류하는 외국인의 초청장,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입국하여 사적 용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1) X1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모집단위의 입학통지서와 주관부서의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X2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모집단위의 입학통지서 등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2) Z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취업허가 등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비자발급기관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외국인에게 기타 신청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외국인이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주재 비자발급기관의 요구에 따라 인터뷰를 받아야 한다.  (1) 입국 거류를 신청하는 경우  (2) 개인신분정보, 입국사유에 대한 추가적인 대조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입국거부를 받았거나 기한 내 출국 명령을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4) 인터뷰가 필요한 기타의 상황.  외국주재 비자발급기관의 비자발급에 중국 경내 유관부서, 단위의 관련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 중국 경내의 유관부서, 단위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9조** 비자발급기관은 심사를 거쳐 비자발급 조건에 부합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응하는 종류의 비자를 발급한다. 입국 후 거류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 비자발급기관은 비자에 입국 후 거류비자 수속을 해야 하는 기한을 명기해야 한다.  **제3장 체류 및 거류 관리**  **제10조** 외국인이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 후 국가의 규정에 따라 체류사유를 변경하거나 입국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새 여권을 사용하거나 단체비자로 입국한 후 객관적인 원인으로 인해 단체가 분리되어 체류해야 하는 경우에는 체류지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 비자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제11조** 중국 경내의 외국인이 소지한 비자를 분실하거나 훼손, 도난 당한 경우, 지체 없이 체류지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 비자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제12조** 외국인이 비자 연장, 갱신, 재발급 및 체류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표를 작성하고 본인의 여권 또는 기타 국제여행증서, 규정에 부합되는 사진과 신청사유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외국인의 비자 연장, 갱신, 재발급 또는 체류비자 신청이 접수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는 유효기간이 7일을 초과하지 않는 접수증빙서류를 발급해야 하며, 동시에 접수증빙서류의 유효기간 내에 발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외국인의 비자 연장, 갱신, 재발급 신청과 체류비자의 신청수속 또는 자료가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는 신청인이 이행해야 할 수속과 보완이 필요한 신청자료를 1차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신청인이 비자수속으로 인해 여권 또는 기타 국제여행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접수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중국 경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제14조**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의 비자 체류기한 연장 결정은 본차 입국에만 유효하며 비자의 입국 횟수와 입국 유효기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연장하는 누계 체류기한은 비자의 원래 체류기한을 초과할 수 없다.  비자 체류기한을 연장한 후 외국인은 원래의 비자 사유와 연장 기한에 따라 체류해야 한다.  **제15조** 거류비자는 아래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1) 취업류 거류비자, 중국 경내에서 취업하는 자에게 발급  (2) 학업류 거류비자, 중국 경내에서 장기간 공부하는 자에게 발급  (3) 기자류 거류비자, 중국 신문기구에서 상주하는 외국기자에게 발급  (4) 단취류 거류비자, 가족이 모이기 위해 중국경내에서 거류하고 있는 중국공민의 가족 구성원과 중국 영구거주 자격을 구비한 외국인의 가족구성원, 그리고 입양 등의 원인으로 중국 경내에서 거류해야 하는 자에게 발급  (5) 사적 용무류 거류비자, 장기간 입국 친족방문을 신청하는, 취업 또는 학습 등의 사유로 중국 경내에 거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배우자, 부모, 만 18세 미만의 자녀, 배우자의 부모, 그리고 기타 사적인 용무로 중국 경내에서 거류해야 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제16조** 외국인이 거류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본인의 여권 또는 기타 국제여행증서, 그리고 규정에 부합되는 사진과 신청사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본인은 거주지 현급이상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 가서 관련 수속을 밟는 동시에 지문 등 인체바이오 식별정보를 남겨야 한다.  (1) 취업류 거류비자, 취업허가 등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국가에서 필요한 고급인재와 시급히 필요한 전문인재인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학업류 거류비자, 규정에 따라 학업기간을 명기한 중국경내 모집단위의 공문을 제출해야 한다.  (3) 기자류 거류비자, 유관 주관부서의 공문 및 심사 발급한 기자증을 제출해야 한다.  (4) 단취류 거류비자, 가족이 모이기 위해 중국 경내에서 거류해야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과 신청사유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입양 등의 원인으로 인해 중국 경내에서 거류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탁서 등의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5) 사적 용무류 거류비자, 장기간 친족 방문인 경우 요구에 따라 친족관계증명, 방문대상자의 거류비자 등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입국하여 사적 용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적 용무 처리에 필요한 중국 경내 거류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이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거류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건강검진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강검진서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내에 유효하다.  **제17조** 외국인이 거류비자 연장, 갱신,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표를 작성하고 본인의 여권 또는 기타 국제여행증서, 그리고 규정에 부합되는 사진과 신청사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18조** 외국인의 거류비자 신청 또는 거류비자 연장, 갱신, 재발급 신청이 접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는 유효기한이 15일을 초과하지 않는 접수증빙서류를 발급해야 하며, 동시에 접수증빙서류상 유효기한 내에 발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외국인의 거류비자 신청 또는 거류비자 연장, 갱신, 재발급 신청 수속 또는 자료가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는 신청인이 이행해야 할 수속과 보완이 필요한 신청자료를 1차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신청인이 비자 수속으로 인해 그 여권 또는 기타 국제여행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접수증빙서류에 의거하여 중국 경내에서 합법적으로 거류할 수 있다.  **제19조** 외국인이 비자 또는 거류비자 연장, 갱신,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체류비자를 신청함에 있어서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초청단위나 개인, 신청인의 친족, 관련 전문서비스기구에서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만 16세 미만, 만 60세 또는 질병 등의 원인으로 인해 행동이 불편한 경우  (2) 첫 입국이 아니며 중국 경내에서의 체류, 거류 기록이 양호한 경우  (3) 초청단위나 개인이 외국인의 중국경내 체류기간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담보를 제공한 경우.  거류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이 국가에서 필요한 외국 고급인재나 시급히 필요한 전문인재거나 또는 전 항에서 규정한 상황에 속하는 경우에는 초청단위 또는 개인, 신청인의 친족, 관련 전문서비스기구에서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는 인터뷰, 전화문의, 현지조사 등의 방식으로 신청사유의 진실성을 대조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인과 초청장, 증명자료를 발급한 단위나 개인은 마땅히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21조** 외국인이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는 비자 또는 거류비자의 연장, 갱신, 재발급을 승인하지 않으며 체류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다.  (1) 규정에 따라 신청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2) 신청과정 중 허위로 날조한 경우  (3) 중국의 관련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중국 경내에서의 체류, 거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4) 비자 또는 거류비자의 연장, 갱신, 재발급 승인 또는 체류비자 발급에 적합하지 않는 기타의 상황.  **제22조** 학업류 거류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고학 또는 교외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소재 학교의 동의를 거치고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 신청하여 거류비자에 고학 또는 교외실습 장소, 기한 등의 정보를 추가 기재해야 한다.  학업류 거류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의 거류비자에 전 항에서 규정한 정보를 추가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학 또는 교외실습을 할 수 없다.  **제23조** 중국 경내 외국인이 증서 분실, 파손, 도난 등의 원인으로 인해 유효여권이나 국제여행증서를 소지하지 못하여 본국의 주중국 유관기관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체류지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 출국수속을 신청할 수 있다.  **제24조** 소지한 출입국 증서상에 체류지역이 제한되어 있는 외국인, 출입국 국경수비 검사기관의 임시 입국 승인을 받았으나 체류지역이 제한되어 있는 외국인은 제한된 지역 내에서 체류해야 한다.  **제 25조** 외국인이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불법 거류로 간주한다.  (1) 비자, 체류 및 거류비자상의 체류 및 거류 기한을 초과하여 머무는 경우  (2) 비자면제로 입국한 외국인이 면제기한을 초과하여 머물고 있으나 체류 또는 거류비자 수속을 밟지 않은 경우  (3) 외국인이 제한된 체류 또는 거류지역을 벗어나서 활동하는 경우  (4) 기타의 불법거류 상황.  **제26조** 외국인을 채용한 회사 또는 유학생을 모집한 단위에서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소재지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1) 채용한 외국인이 이직했거나 또는 근무지역이 변경된 경우  (2) 모집한 외국유학생이 졸업, 수료, 이수, 퇴학 등의 원인으로 인해 원래의 모집단위를 떠난 경우  (3) 채용한 외국인, 모집한 외국유학생이 출입국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채용한 외국인, 모집한 외국유학생이 사망하거나 실종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제27조** 금융, 교육, 의료, 전신 등 단위에서 업무 처리를 할 때 외국인의 신분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 신분확인을 신청 할 수 있다.  **제28조** 외국인의 외교, 공무사유로 인한 중국 경내에서의 체류 및 거류비자 발급 관리는 외교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4장 조사 및 송환**  **제29조** 공안기관은 실제 필요에 따라 송환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에 대해 구류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24시간 내에 구류 심사를 받는 외국인을 구치소 또는 송환장소로 이송해야 한다.  날씨, 당사자의 건강상태 등의 원인으로 인해 즉시 송환 또는 추방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법률문서에 의거하여 외국인을 구치소 또는 송환장소에 구치시켜야 한다.  **제30조** 출입국관리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활동범위 제한결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활동범위 제한을 받는 외국인은 반드시 지정된 시간에 공안기관에 가서 신고해야 한다. 결정기관의 승인이 없이는 생활거처지 또는 지정된 지역을 떠날 수 없다.  **제31조** 출입국관리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을 송환시키는 경우 송환결정을 내린 기관은 법에 따라 송환대상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구체적 기한을 확정해야 한다.  **제32조** 외국인의 송환에 필요한 비용은 그 본인이 부담한다. 본인이 부담 능력이 없는 경우, 불법 취업에 속하는 경우는 불법 채용단위 또는 개인이 부담하며, 기타 상황에 속하는 경우는 외국인의 중국 경내 체류 또는 거류에 담보조치를 제공한 단위 또는 개인이 부담한다.  외국인의 송환은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또는 출입국 국경수비 검사기관에서 실시한다.  **제33조** 외국인을 기한부 출국시키는 경우 결정기관은 그가 소지한 출입국증서를 말소 또는 몰수하고 그에게 체류수속을 보완 처리해 주고 출국기한을 정한다. 한정된 출국기한은 최장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34조** 외국인이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비자발급기관은 그가 소지한 비자, 체류 또는 거류비자 등을 폐기시킨다.  (1) 비자, 체류 또는 거류비자를 훼손, 분실, 도난당한 경우  (2) 외국인을 기한부 출국, 송환 또는 추방함에 있어서 그 비자, 체류 또는 거류비자를 몰수 또는 말소하지 않은 경우  (3) 원래의 거류사유가 변경된 후 규정한 기한 내에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 신고를하지 않았으며, 공안기관에서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고를 않은 경우  (4)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제31조에서 규정한 비자, 거류비자 발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에 따라 비자, 체류 또는 거류비자 폐기처리를 하는 경우, 비자발급기관은 당장에서 폐기처리를 선포하거나 또는 공고형식으로 폐기처리를 할 수 있다.  **제35조** 외국인이 소지한 비자, 체류 또는 거류비자가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공안기관은 말소 또는 몰수할 수 있다.  (1) 비자발급기관이 폐기시켰거나 또는 타인이 도용한 경우  (2) 위조, 변조, 사취 또는 기타 방식을 통해 불법 취득한 경우  (3) 소지인이 기한부 출국, 송환, 추방 조치를 받게 된 경우.  말소 또는 몰수를 결정한 기관은 지체 없이 비자발급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 5장 부 칙**  **제36조** 본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자의 입국횟수란 비자 소지인이 비자 입국 유효기한 내에 입국할 수 있는 횟수를 말한다.  (2) 비자의 입국 유효기간란 비자 소지인이 그 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유효기한의 범위를 말한다. 비자발급기관의 특별한 주석이 없으면 소지 비자는 발급일로부터 유효하며, 유효기한 만료 당일의 베이징 시간 24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3) 비자의 체류기한이란 비자 소지인이 매회 입국 후 체류가능한 기한을 말하며, 입국 이튿날부터 기산된다.  (4) 단기란 중국 경내에서의 체류기한이 180일(180일 포함)을 넘지 않는 것을 말한다.  (5) 장기, 상주란 중국 경내에서의 거류기한이 180일을 넘는 것을 말한다.  본 조례에서 규정한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의 승인기한과 접수증빙서류 유효기간은 근무일로 계산하며, 법정휴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37조** 외교부의 승인을 얻고 외국주재 비자발급기관은 현지 유관기구에 외국인의 비자 신청 수리, 입력, 자문 등의 서비스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제38조** 비자 양식은 외교부에서 공안부와 회동하여 규정한다. 체류 및 거류비자의 양식은 공안부에서 규정한다.  **제39조** 본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86년 12월 3일 국무원에서 승인하고 1986년 12월 27일 공안부, 외교부에서 공포하였으며, 1994년 7월 3일과 2010년 4월 24일 국무원에서 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실시세칙>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  | **中华人民共和国**  **外国人入境出境管理条例**  国务院令第637号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条例》已经2013年7月3日国务院第15次常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13年9月1日起施行。  总理 李克强  2013年7月12日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规范签证的签发和外国人在中国境内停留居留的服务和管理，根据《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以下简称出境入境管理法）制定本条例。  **第二条** 国家建立外国人入境出境服务和管理工作协调机制，加强外国人入境出境服务和管理工作的统筹、协调与配合。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可以根据需要建立外国人入境出境服务和管理工作协调机制，加强信息交流与协调配合，做好本行政区域的外国人入境出境服务和管理工作。  **第三条** 公安部应当会同国务院有关部门建立外国人入境出境服务和管理信息平台，实现有关信息的共享。  **第四条** 在签证签发管理和外国人在中国境内停留居留管理工作中，外交部、公安部等国务院部门应当在部门门户网站、受理出境入境证件申请的地点等场所，提供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律法规和其他需要外国人知悉的信息。  **第二章 签证的类别和签发**  **第五条** 外交签证、礼遇签证、公务签证的签发范围和签发办法由外交部规定。  **第六条** 普通签证分为以下类别，并在签证上标明相应的汉语拼音字母：  （一）C字签证，发给执行乘务、航空、航运任务的国际列车乘务员、国际航空器机组人员、国际航行船舶的船员及船员随行家属和从事国际道路运输的汽车驾驶员。  （二）D字签证，发给入境永久居留的人员。  （三）F字签证，发给入境从事交流、访问、考察等活动的人员。  （四）G字签证，发给经中国过境的人员。  （五）J1字签证，发给外国常驻中国新闻机构的外国常驻记者；J2字签证，发给入境进行短期采访报道的外国记者。  （六）L字签证，发给入境旅游的人员；以团体形式入境旅游的，可以签发团体L字签证。  （七）M字签证，发给入境进行商业贸易活动的人员。  （八）Q1字签证，发给因家庭团聚申请入境居留的中国公民的家庭成员和具有中国永久居留资格的外国人的家庭成员，以及因寄养等原因申请入境居留的人员；Q2字签证，发给申请入境短期探亲的居住在中国境内的中国公民的亲属和具有中国永久居留资格的外国人的亲属。  （九）R字签证，发给国家需要的外国高层次人才和急需紧缺专门人才。  （十）S1字签证，发给申请入境长期探亲的因工作、学习等事由在中国境内居留的外国人的配偶、父母、未满18周岁的子女、配偶的父母，以及因其他私人事务需要在中国境内居留的人员；S2字签证，发给申请入境短期探亲的因工作、学习等事由在中国境内停留居留的外国人的家庭成员，以及因其他私人事务需要在中国境内停留的人员。  （十一）X1字签证，发给申请在中国境内长期学习的人员；X2字签证，发给申请在中国境内短期学习的人员。  （十二）Z字签证，发给申请在中国境内工作的人员。  **第七条** 外国人申请办理签证，应当填写申请表，提交本人的护照或者其他国际旅行证件以及符合规定的照片和申请事由的相关材料。  （一）申请C字签证，应当提交外国运输公司出具的担保函件或者中国境内有关单位出具的邀请函件。  （二）申请D字签证，应当提交公安部签发的外国人永久居留身份确认表。  （三）申请F字签证，应当提交中国境内的邀请方出具的邀请函件。  （四）申请G字签证，应当提交前往国家（地区）的已确定日期、座位的联程机（车、船）票。  （五）申请J1字及J2字签证，应当按照中国有关外国常驻新闻机构和外国记者采访的规定履行审批手续并提交相应的申请材料。  （六）申请L字签证，应当按照要求提交旅行计划行程安排等材料；以团体形式入境旅游的，还应当提交旅行社出具的邀请函件。  （七）申请M字签证，应当按照要求提交中国境内商业贸易合作方出具的邀请函件。  （八）申请Q1字签证，因家庭团聚申请入境居留的，应当提交居住在中国境内的中国公民、具有永久居留资格的外国人出具的邀请函件和家庭成员关系证明，因寄养等原因申请入境的，应当提交委托书等证明材料；申请Q2字签证，应当提交居住在中国境内的中国公民、具有永久居留资格的外国人出具的邀请函件等证明材料。  （九）申请R字签证，应当符合中国政府有关主管部门确定的外国高层次人才和急需紧缺专门人才的引进条件和要求，并按照规定提交相应的证明材料。  （十）申请S1字及S2字签证，应当按照要求提交因工作、学习等事由在中国境内停留居留的外国人出具的邀请函件、家庭成员关系证明，或者入境处理私人事务所需的证明材料。  （十一）申请X1字签证应当按照规定提交招收单位出具的录取通知书和主管部门出具的证明材料；申请X2字签证，应当按照规定提交招收单位出具的录取通知书等证明材料。  （十二）申请Z字签证，应当按照规定提交工作许可等证明材料。  签证机关可以根据具体情况要求外国人提交其他申请材料。  **第八条** 外国人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按照驻外签证机关要求接受面谈：  （一）申请入境居留的；  （二）个人身份信息、入境事由需要进一步核实的；  （三）曾有不准入境、被限期出境记录的；  （四）有必要进行面谈的其他情形。  驻外签证机关签发签证需要向中国境内有关部门、单位核实有关信息的，中国境内有关部门、单位应当予以配合。  **第九条** 签证机关经审查认为符合签发条件的，签发相应类别签证。对入境后需要办理居留证件的，签证机关应当在签证上注明入境后办理居留证件的时限。  **第三章 停留居留管理**  **第十条** 外国人持签证入境后，按照国家规定可以变更停留事由、给予入境便利的，或者因使用新护照、持团体签证入境后由于客观原因需要分团停留的，可以向停留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申请换发签证。  **第十一条** 在中国境内的外国人所持签证遗失、损毁、被盗抢的，应当及时向停留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申请补发签证。  **第十二条** 外国人申请签证的延期、换发、补发和申请办理停留证件，应当填写申请表，提交本人的护照或者其他国际旅行证件以及符合规定的照片和申请事由的相关材料。  **第十三条** 外国人申请签证延期、换发、补发和申请办理停留证件符合受理规定的，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应当出具有效期不超过7日的受理回执，并在受理回执有效期内作出是否签发的决定。  外国人申请签证延期、换发、补发和申请办理停留证件的手续或者材料不符合规定的，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应当一次性告知申请人需要履行的手续和补正的申请材料。  申请人所持护照或者其他国际旅行证件因办理证件被收存期间，可以凭受理回执在中国境内合法停留。  **第十四条** 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作出的延长签证停留期限决定，仅对本次入境有效，不影响签证的入境次数和入境有效期，并且累计延长的停留期限不得超过原签证注明的停留期限。  签证停留期限延长后，外国人应当按照原签证规定的事由和延长的期限停留。  **第十五条** 居留证件分为以下种类：  （一）工作类居留证件，发给在中国境内工作的人员；  （二）学习类居留证件，发给在中国境内长期学习的人员；  （三）记者类居留证件，发给外国常驻中国新闻机构的外国常驻记者；  （四）团聚类居留证件，发给因家庭团聚需要在中国境内居留的中国公民的家庭成员和具有中国永久居留资格的外国人的家庭成员，以及因寄养等原因需要在中国境内居留的人员；  （五）私人事务类居留证件，发给入境长期探亲的因工作、学习等事由在中国境内居留的外国人的配偶、父母、未满18周岁的子女、配偶的父母，以及因其他私人事务需要在中国境内居留的人员。  **第十六条** 外国人申请办理外国人居留证件，应当提交本人护照或者其他国际旅行证件以及符合规定的照片和申请事由的相关材料，本人到居留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办理相关手续，并留存指纹等人体生物识别信息。  （一）工作类居留证件，应当提交工作许可等证明材料；属于国家需要的外国高层次人才和急需紧缺专门人才的，应当按照规定提交有关证明材料。  （二）学习类居留证件，应当按照规定提交招收单位出具的注明学习期限的函件等证明材料。  （三）记者类居留证件，应当提交有关主管部门出具的函件和核发的记者证。  （四）团聚类居留证件，因家庭团聚需要在中国境内居留的，应当提交家庭成员关系证明和与申请事由相关的证明材料；因寄养等原因需要在中国境内居留的，应当提交委托书等证明材料。  （五）私人事务类居留证件，长期探亲的，应当按照要求提交亲属关系证明、被探望人的居留证件等证明材料；入境处理私人事务的，应当提交因处理私人事务需要在中国境内居留的相关证明材料。|  外国人申请有效期1年以上的居留证件的，应当按照规定提交健康证明。健康证明自开具之日起6个月内有效。  **第十七条** 外国人申请办理居留证件的延期、换发、补发，应当填写申请表，提交本人的护照或者其他国际旅行证件以及符合规定的照片和申请事由的相关材料。  **第十八条** 外国人申请居留证件或者申请居留证件的延期、换发、补发符合受理规定的，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应当出具有效期不超过15日的受理回执，并在受理回执有效期内作出是否签发的决定。  外国人申请居留证件或者申请居留证件的延期、换发、补发的手续或者材料不符合规定的，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应当一次性告知申请人需要履行的手续和补正的申请材料。  申请人所持护照或者其他国际旅行证件因办理证件被收存期间，可以凭受理回执在中国境内合法居留。  **第十九条** 外国人申请签证和居留证件的延期、换发、补发，申请办理停留证件，有下列情形之一的，可以由邀请单位或者个人、申请人的亲属、有关专门服务机构代为申请：  （一）未满16周岁或者已满60周岁以及因疾病等原因行动不便的；  （二）非首次入境且在中国境内停留居留记录良好的；  （三）邀请单位或者个人对外国人在中国境内期间所需费用提供保证措施的。  外国人申请居留证件，属于国家需要的外国高层次人才和急需紧缺专门人才以及前款第一项规定情形的，可以由邀请单位或者个人、申请人的亲属、有关专门服务机构代为申请。  **第二十条** 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可以通过面谈、电话询问、实地调查等方式核实申请事由的真实性，申请人以及出具邀请函件、证明材料的单位或者个人应当予以配合。  **第二十一条** 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对有下列情形之一的外国人，不予批准签证和居留证件的延期、换发、补发，不予签发停留证件：  （一）不能按照规定提供申请材料的；  （二）在申请过程中弄虚作假的；  （三）违反中国有关法律、行政法规规定，不适合在中国境内停留居留的；  （四）不宜批准签证和居留证件的延期、换发、补发或者签发停留证件的其他情形。  **第二十二条** 持学习类居留证件的外国人需要在校外勤工助学或者实习的，应当经所在学校同意后，向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申请居留证件加注勤工助学或者实习地点、期限等信息。  持学习类居留证件的外国人所持居留证件未加注前款规定信息的，不得在校外勤工助学或者实习。  **第二十三条** 在中国境内的外国人因证件遗失、损毁、被盗抢等原因未持有效护照或者国际旅行证件，无法在本国驻中国有关机构补办的，可以向停留居留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申请办理出境手续。  **第二十四条** 所持出境入境证件注明停留区域的外国人、出入境边防检查机关批准临时入境且限定停留区域的外国人，应当在限定的区域内停留。  **第二十五条** 外国人在中国境内有下列情形之一的，属于非法居留：  （一）超过签证、停留居留证件规定的停留居留期限停留居留的；  （二）免办签证入境的外国人超过免签期限停留且未办理停留居留证件的；  （三）外国人超出限定的停留居留区域活动的；  （四）其他非法居留的情形。  **第二十六条** 聘用外国人工作或者招收外国留学生的单位，发现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及时向所在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报告：  （一）聘用的外国人离职或者变更工作地域的；  （二）招收的外国留学生毕业、结业、肄业、退学，离开原招收单位的；  （三）聘用的外国人、招收的外国留学生违反出境入境管理规定的；  （四）聘用的外国人、招收的外国留学生出现死亡、失踪等情形的。  **第二十七条** 金融、教育、医疗、电信等单位在办理业务时需要核实外国人身份信息的，可以向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申请核实。  **第二十八条** 外国人因外交、公务事由在中国境内停留居留证件的签发管理，按照外交部的规定执行。  **第四章 调查和遣返**  **第二十九条** 公安机关根据实际需要可以设置遣返场所。  依照出境入境管理法第六十条的规定对外国人实施拘留审查的，应当在24小时内将被拘留审查的外国人送到拘留所或者遣返场所。  由于天气、当事人健康状况等原因无法立即执行遣送出境、驱逐出境的，应当凭相关法律文书将外国人羁押在拘留所或者遣返场所。  **第三十条** 依照出境入境管理法第六十一条的规定，对外国人限制活动范围的，应当出具限制活动范围决定书。被限制活动范围的外国人，应当在指定的时间到公安机关报到；未经决定机关批准，不得变更生活居所或者离开限定的区域。  **第三十一条** 依照出境入境管理法第六十二条的规定，对外国人实施遣送出境的，作出遣送出境决定的机关应当依法确定被遣送出境的外国人不准入境的具体期限。  **第三十二条** 外国人被遣送出境所需的费用由本人承担。本人无力承担的，属于非法就业的，由非法聘用的单位、个人承担；属于其他情形的，由对外国人在中国境内停留居留提供保证措施的单位或者个人承担。  遣送外国人出境，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或者出入境边防检查机关实施。  **第三十三条** 外国人被决定限期出境的，作出决定的机关应当在注销或者收缴其原出境入境证件后，为其补办停留手续并限定出境的期限。限定出境期限最长不得超过15日。  **第三十四条** 外国人有下列情形之一的，其所持签证、停留居留证件由签发机关宣布作废：  （一）签证、停留居留证件损毁、遗失、被盗抢的；  （二）被决定限期出境、遣送出境、驱逐出境，其所持签证、停留居留证件未被收缴或者注销的；  （三）原居留事由变更，未在规定期限内向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申报，经公安机关公告后仍未申报的；  （四）有出境入境管理法第二十一条、第三十一条规定的不予签发签证、居留证件情形的。  签发机关对签证、停留居留证件依法宣布作废的，可以当场宣布作废或者公告宣布作废。  **第三十五条** 外国人所持签证、停留居留证件有下列情形之一的，由公安机关注销或者收缴：  （一）被签发机关宣布作废或者被他人冒用的；  （二）通过伪造、变造、骗取或者其他方式非法获取的；  （三）持有人被决定限期出境、遣送出境、驱逐出境的。  作出注销或者收缴决定的机关应当及时通知签发机关。  **第五章 附 则**  **第三十六条** 本条例下列用语的含义：  （一）签证的入境次数，是指持证人在签证入境有效期内可以入境的次数。  （二）签证的入境有效期，是指持证人所持签证入境的有效时间范围。非经签发机关注明，签证自签发之日起生效，于有效期满当日北京时间24时失效。  （三）签证的停留期限，是指持证人每次入境后被准许停留的时限，自入境次日开始计算。  （四）短期，是指在中国境内停留不超过180日（含180日）。  （五）长期、常驻，是指在中国境内居留超过180日。  本条例规定的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审批期限和受理回执有效期以工作日计算，不含法定节假日。  **第三十七条** 经外交部批准，驻外签证机关可以委托当地有关机构承办外国人签证申请的接件、录入、咨询等服务性事务。  **第三十八条** 签证的式样由外交部会同公安部规定。停留居留证件的式样由公安部规定。  **第三十九条** 本条例自2013年9月1日起施行。1986年12月3日国务院批准，1986年12月27日公安部、外交部公布，1994年7月13日、2010年4月24日国务院修订的《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实施细则》同时废止。 |